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청원서

| | |
|-----|--|
| 의 안 | |
| 번 호 | |

제안년월일 : 1996. 8. 26

제 안 자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다목적댐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케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댐의 물을 맑게 보전해 나가기 위하여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청원을 하 고자 함

2. 제안이유

- 생활용수, 농·공업용수 등을 확보하여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댐은 건설되어져야 함
-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관리상 피해를 받고 있으며, 규제에 상응한 보상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만 하는 것은 댐 주변 주민들의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등을 제약하는 것임
- 수자원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맑은 물을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3. 참고사항

- 댐 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서

수 신 : 국회의장

제 목 :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청원서 3부. 끝.

청 원 자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성 명 : 충청북도의회의장 차 주 원 인

외 37 인

소 개 의 원 인

청원 소개의견서

| | |
|-------|----------------------------|
| 청원인 |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
| | 성명 : 충청북도의회 |
| 건명 |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
| 소개년월일 | 1996년 9월 일 |

소개의견

댐은 훌려 버려지는 물을 모아 두었다가 생활용수, 농·공업용수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설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관리상의 피해를 너무 많이 받고 있으며, 규제에 상응한 보상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만 하는 것은 댐 주변 주민들의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등을 제약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원성으로 댐의 물을 맑게 보전하는데 협조를 구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다목적댐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케 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댐의 물을 맑게 보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운영이 시급한 실정으로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
인

「특정디목적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청원서

충청북도의회

特定多目的댐

周邊地域支援에 관한法律制定(案)

I. 法制定의必要性

- 댐은 흘려버려지는 물을 모아 두었다가 생활용수, 농·공업용 수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설하여야 함

- 기완공된댐 : 17 개소(충북 전국담수량의 33%)

- 발전용댐 7 " 1,699 백만톤
- 다목적댐 10 " 11,082 "

| 구 분 | 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
| 댐 수 | 17개소 | 2 | 4 | 3 | 1 | 3 | 2 | 2 |
| 담수량 | 백만톤 | | | | | | | |
| | 12,781 | 430 | 4,148 | 4,255 | 466 | 713 | 1,843 | 926 |

- 건설 및 계획중인 다목적댐('96 ~ 2011까지)

- 건설 중 : 6개댐(강원1, 충남1, 전북2, 경남2)
- 계획 중 : 28개댐(설치예정 대외비)

- 그러나 댐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관리상의 피해를 너무 많이 받고 있음

- 각종 규제행위로 인한 개발행위제한, 경제침체

◦ 지역내 주민의 질병(눈병, 피부병) 유발과 농작물 발아부진등

※충북의 경우

- 대청댐주변 3개군 주민들의 피해보상요구 매년증가
- 충주댐주변 3개시군 주민들 역시 각종 개발제한 철폐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등의 지원요구

□ 규제에 상응한 보상없이 일방적으로 규제만 하는것은 댐주변 주민들의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등을 제약 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로인해 주민들의 원성으로 댐의물을 맑게 보전하는데 협조를 구하기가 곤란한 실정임

□ 따라서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다목적댐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케 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댐의물을 맑게 보전해 나가기 위해서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에관한법률의 제정 운영이 시급한 실정임

II. 法律基本構想

- 다목적댐의 건설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댐주변 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규제에 상응하는 보상성격의 지원
- 지원사업의 재원은
 - 국가에서 매년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
 - 다목적댐 수탁관리자의 출연금
 - 수혜지역 자치단체의 부담금 및 차입금 등으로 함
- 재원의 관리. 운용은 기금을 설치운영
- 다목적댐주변 지원사업에 대한 장기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예산 범위내에서년차별로 사업을 추진함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된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은 주민 소득기반 사업과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지원
 - 일반 다목적댐주변지역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 사업의 집행은 해당지역 자치단체에 기금을 교부하여 집행함

III. 主 要 骨 子

□ 제 1 장 : 총 칙

- ① 법제정 목적을 규정함(안제1조)
- ② 법제정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제2조)
- ③ 댐주변지역 및 수혜지역을 지정(안제3조)
- ④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안제4조)

□ 제 2 장 : 지원사업기금

- ①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금설치와 재원조성(안제6조)
 - 일반회계 출연금
 - 다목적댐 수탁관리자(수자원공사)의 출연금
 - 수혜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
- ② 기금의 운용, 관리자 지정(안제9조)

] 제 3 장 : 지원사업의시행

- ① 댐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장기종합지원계획 수립(안제11조)
- ② 지원사업 종류의 명정(안제13조)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댐주변지역은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와 주민소득기반 사업비

- 일반지역 댐주변지역은 환경기초시설운영비를 지원

③ 매년 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확정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기금으로 교부(안제14조)

④ 지원사업시행기간 명정(안제15조)

- 환경기초시설운영비 : 매년 지속적 지원

- 주민소득기반사업비 : 장기종합지원계획상 사업 종료시까지

□ 제 4 장 : 보 칙

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 추진지도·점검 권한 부여(안제16조)

② 이법 시행일 이전에 건설된 다목적댐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안제17조)

부 칙

①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② 다른법률과의 관계 명정(안 부칙제2조)

-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3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제42조

의4 (지원사업의 재원) 폐지

- 사용잔액은 이법의 재원으로 납입

特定多目的댐周邊地域에 관한法律(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법은 다목적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원활을 기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다목적댐의 수질보전및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목적댐" 이라함은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 의하는 댐을 말한다.
2. "환경기초시설" 이라함은 환경관련법률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수,분 뉴,폐수,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3. "다목적댐주변지역" 과 "수혜지역" 이라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목적댐주변지역 및 수혜지역지정.고시등) ① 다목적댐주변지역

및 수혜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주변지역및 수 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때는 관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시,

도지사"라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를 거쳐 야한다. 지정된 내용을 변경할때도 또한 같다.

제4조(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의 설치)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내에 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 장 지원사업기금

제5조(기금의 설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 부터의 출연금
2. 특정다목적댐법 제30조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수탁관리자의 출연금
3. 수혜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전년도 사용기금의 이월액및 정산액
6. 기타 조성된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 수탁관리자는 발전, 수도 또는 공업용수의 판매수익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의 금액을 출연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부담) ①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혜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부담금을 부담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납기일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납부토록 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이를 사용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2. 지원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제10조(기금의 차입)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 3 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11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건설부교통부장관은 다목적댐 주변지역별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종합지원계획(이하 "장기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시장·군수는 제11조 제1항의 장기계획에 의하여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종합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4월 말일 이전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3조(지원사업의 종류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주변지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 주변지역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환경기초시설비등 특별지원사업
3.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 공공시설, 육영사업등
4. 환경변화조사 연구기관 설치·운영지원사업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유형별 지원내용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금 결정)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 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원기금으로 해당자치단체에 교부 한다.

제15조(지원사업의 시행기간) ① 제13조 제1항 제1호및 제2호의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②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은 제11조 제1항의 장기계획상 사업종료시 까지로 한다.

제 4 장 보 칙

제16조(보고및검사)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기금이 지원된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7조(적용범위) 이법 시행일 이전부터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관리되고 있는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업은 이법의 적용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과의 관계) ① 이법 시행과 동시에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3과 제42조의4는 폐지한다. 다만 동조와 관련하여 시행되는 사업은 사업 종료시 까지 종전의 법 적용을 받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재원 사용잔액은 사업 종료후 2월이내에 이법 제6조의 기금으로 납입한다.

1996. 8.

댐 관 련 대 책 특 별 위 원 회 소 위 원 회 활 동 상 황 보 고 서

댐 관 련 대 책 특 별 위 원 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 댐 관련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 일 시 : 1996년 8월 6일 11: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석인원 : 10명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회의내용 : 세부 추진계획 협의
- 회의결과
 - 세부추진계획 의결
 - 특별법 입법청원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 특별법 소위원회 회의개최 (1차)

- 일 시 : 1996년 8월 16일 11:00 ~ 13:3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석인원 : 9명
 - 도의원 : 7명 (박학래, 최선환, 이길하, 유재철, 오성진, 이선호, 댐특위위원, 김준석 운영위원장)
 - 업무보조 : 2명 (김영만 전문위원외 1명)
- 회의내용
 -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 특별법안에 대한 자문 법률전문가 선정
 - 소개 국회의원 선정 방법등
- 회의결과
 - 법률안 제13조(지원사업의 종류등) 항목에 「환경변화조사 연구기관 설치·운영지원사업등」 법조항 4항 삽입 법률안 조정
 - 충청북도의회 고문변호사(정영수)에게 법률안에 대한 자문을 구함
 - 충청북도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협의과정을 거쳐 청원소개 국회의원 선정

□ 특별법 청원입법을 위한 자문 법률전문가 면담

- 일 시 : 1996년 8월 20일 12:00 ~ 14:20
- 장 소 : 청주시 상당구 영동 96 - 3 솔밭식당
- 면담내용
 -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업무협의 및 법률안에 대한 자문
- 면담결과
 - 자료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

□ 청원입법을 위한 업무협의자 국회방문

- 일 시 : 1996년 8월 23일
- 장 소 : 서울특별시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 방문기관 : 구천서, 오용운, 김선길, 김영준, 신경식, 어준선, 김종호, 정우택
(의원회관)
- 방문인원 : 10명
 - 도 의 원 : 8명 (박학래위원장외 7인)
 - 업무보조 : 1명 (박원훈)
 - 기 타 : 1명 (운전기사)
- 협의내용
 -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취지 설명
 - 청원입법에 관한 업무 협의
- 방문결과
 - 청원입법을 위한 소개국회의원이 되줄것을 당부